

**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
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(요약)**

2022. 04.

**한국토지주택공사
경북대학교**

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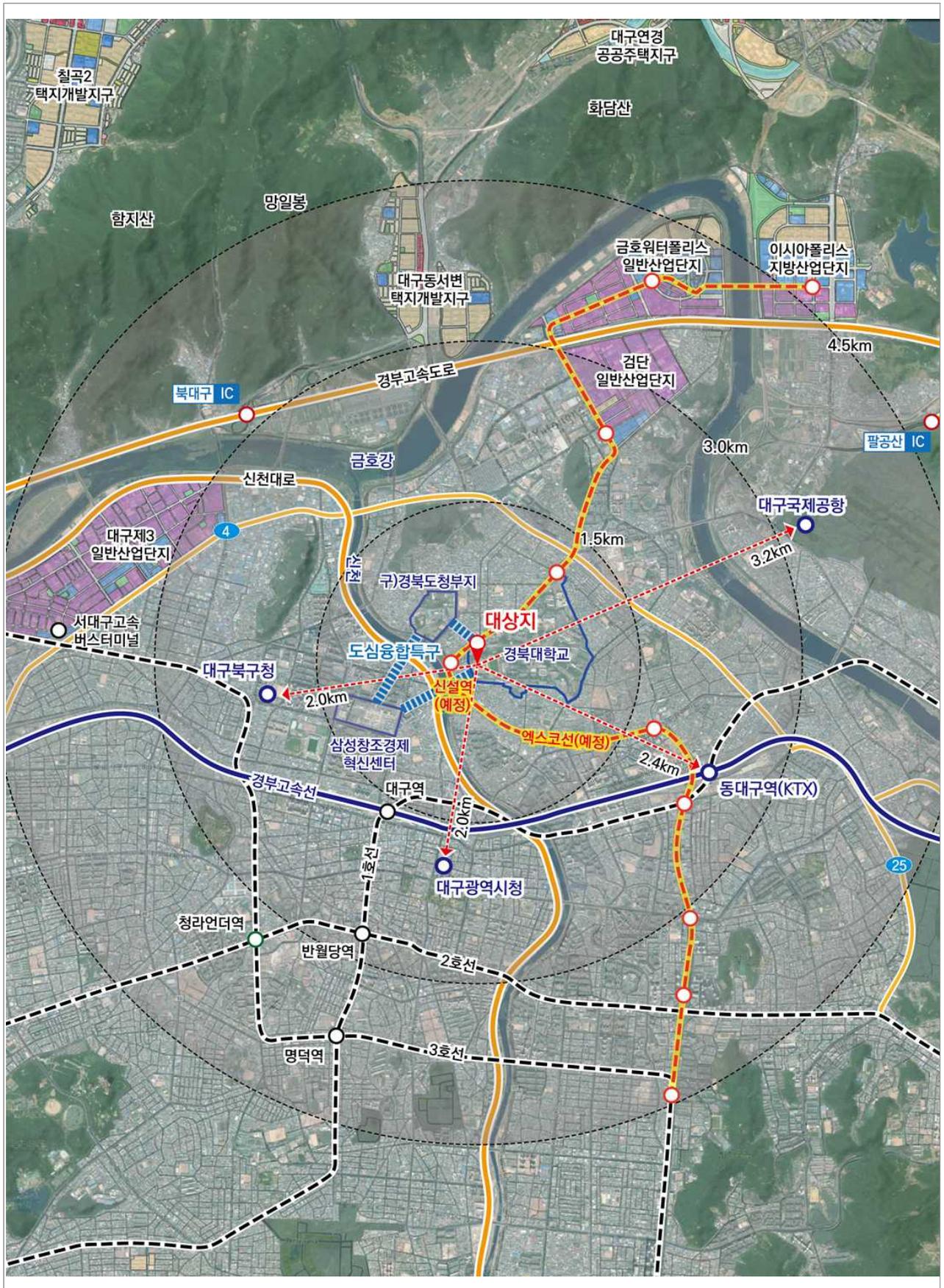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| 구분 | 내용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사업명 |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| |
| 위치 |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내 일원 | |
| 사업유형 |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3조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| |
| 시행자 | 한국토지주택공사, 경북대학교 | |
| 사업면적 (지구지정 면적) | 29,302㎡ (1단계: 17,346㎡, 2단계: 11,956㎡) | |
| 사업비 | 40.7억원(LH : 19.4억, 대학 : 21.3억) | |
| 사업기간 (산업단지계획승인~사업준공) | 2022~2026 1단계 : 2022년 ~ 2024년(한국토지주택공사, 경북대학교) 2단계 : 2025년 ~ 2026년(경북대학교) | |
| 시행방식 | 공영개발방식(한국토지주택공사, 경북대학교) | |
| 토지용도 | 산업시설, 복합시설(산업, 상업 등), 공공시설, 기타시설 | |
| 유치업종 | 첨단제조산업 및 첨단연구산업 | |
| 상위계획 | 도시기본계획 | 주거용지(100%) |
| | 도시관리계획 | 제2종 일반주거지역(100%), 도시계획시설(대학교)(100%), 시가지경관지구(3%) |

□ 추진경위

- 2021. 01 : 캠퍼스 혁신파크 본사업 공모 공고
- 2021. 04 : 캠퍼스 혁신파크 본사업 대학 선정 (경북대, 전남대)
- 2021. 07 : 기본협약체결 (경북대, 전남대)
- 2021. 12 : 산업단지계획(안) 승인 신청
- 2022. 04 : 산업단지계획(안) 승인 신청(보완)
- 2022. 05 : 합동설명회 개최
- 2022. 05 ~ :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
- 2022. 下 : 산업단지계획 승인 예정
- 2023. 12 : 단지조성공사 착공(1단계) 예정
- 2024. 12 : 단지조성공사 준공(1단계) 예정

□ 위치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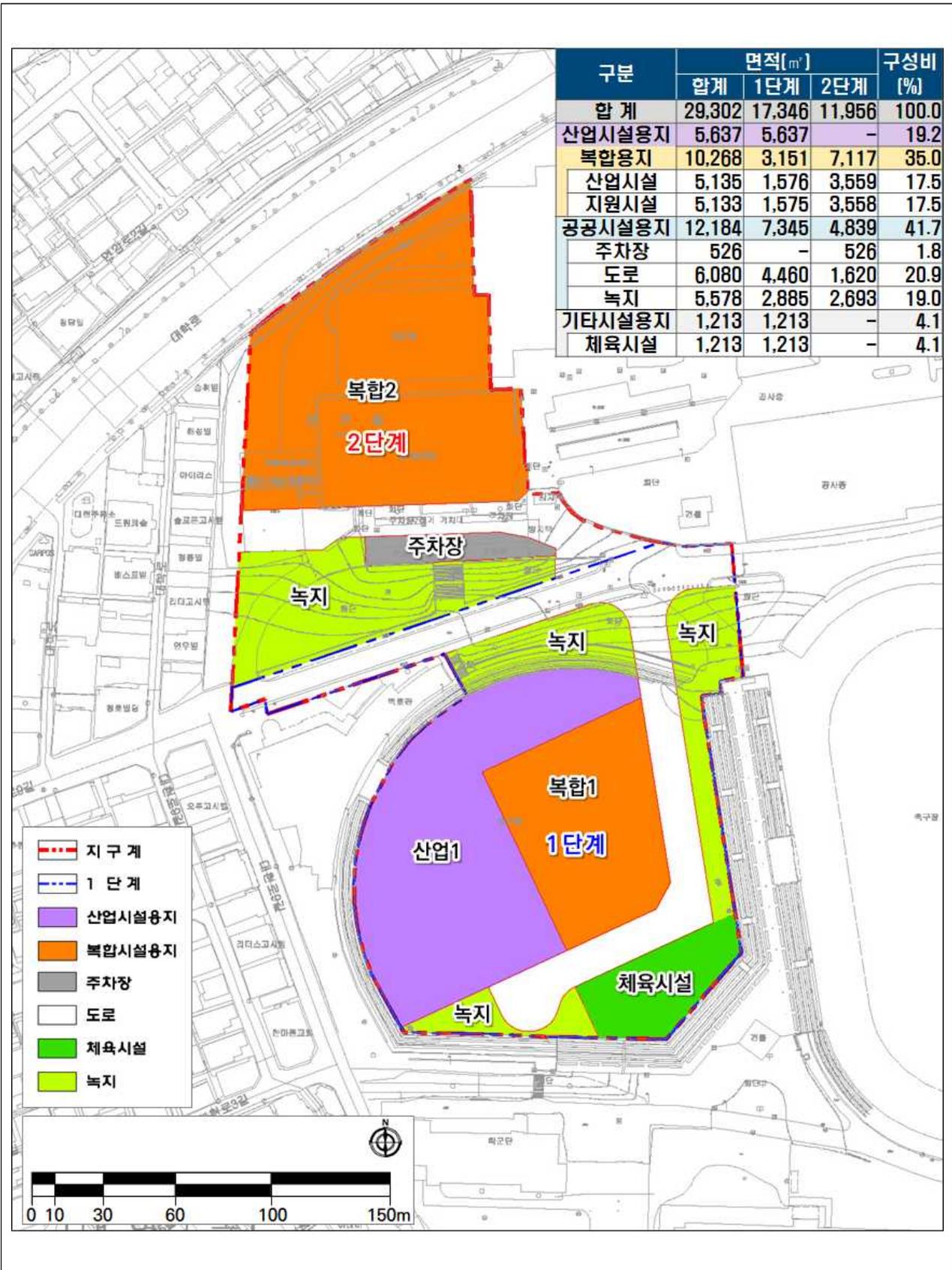
□ 지구계 결정사유(안)

| 구 분 | 결 정 사 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① | 대학시설(도시계획시설) 경계 |
| ② | 대학 내부 건축물 경계 |
| ③ | 대학 내부 도로(현황측량) 경계 |
| ④ | 급경사 구간 완화공간 확보 고려 |
| ⑤ | 대학 단지내 야구장(현황측량) 경계 |
| ⑥ | 지적경계(국유지외 제외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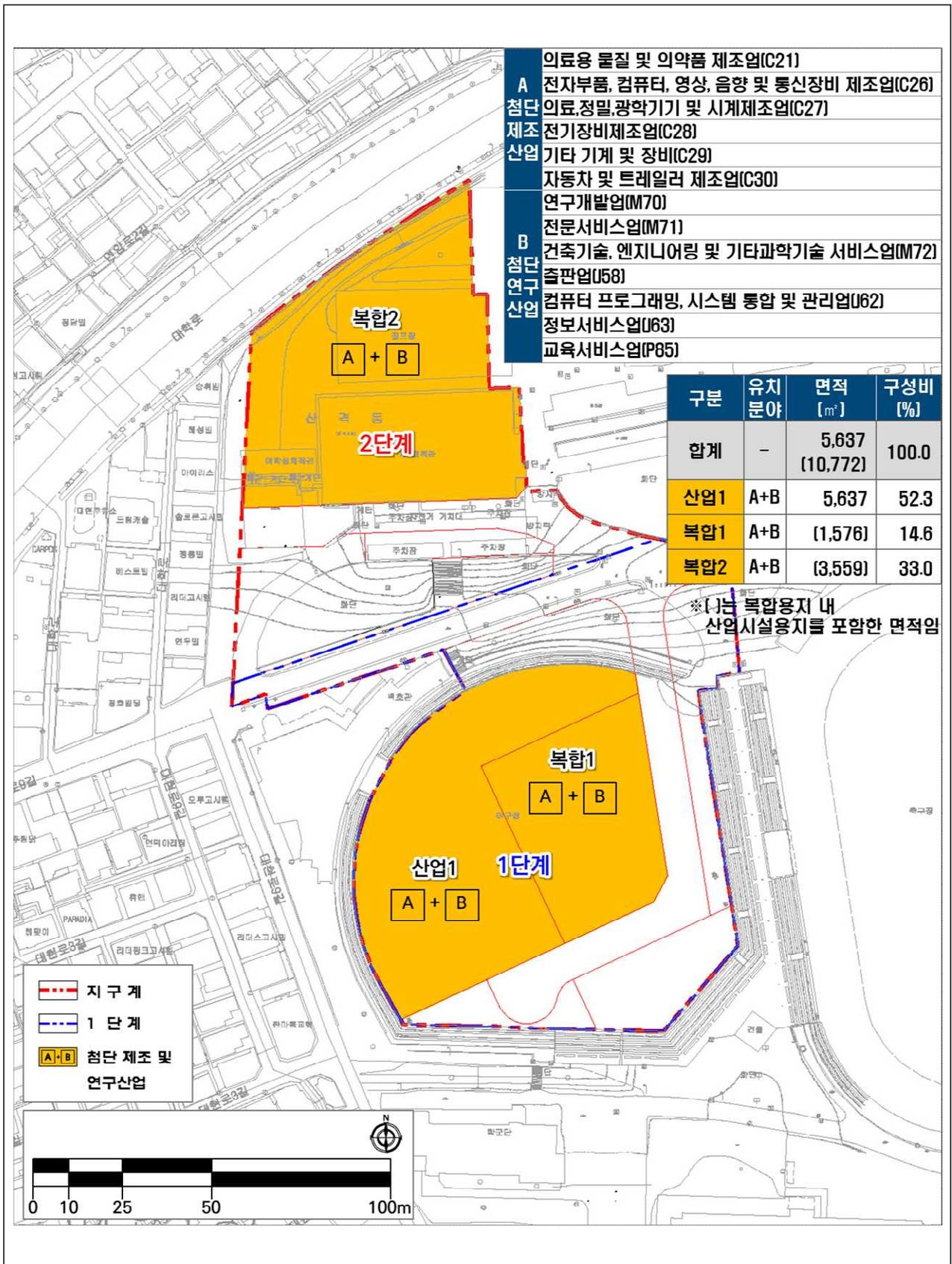
[지구계 결정사유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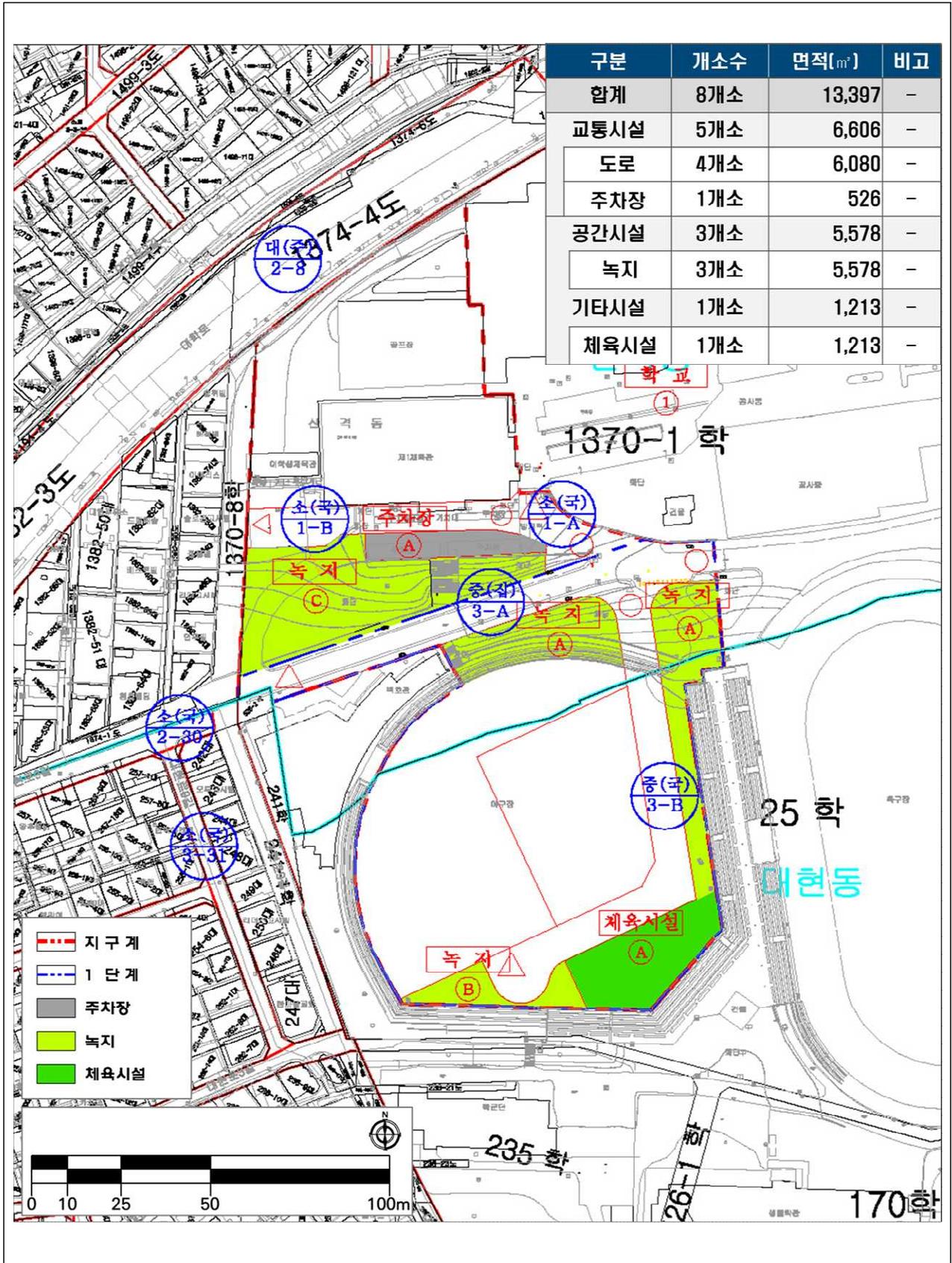
토지이용계획(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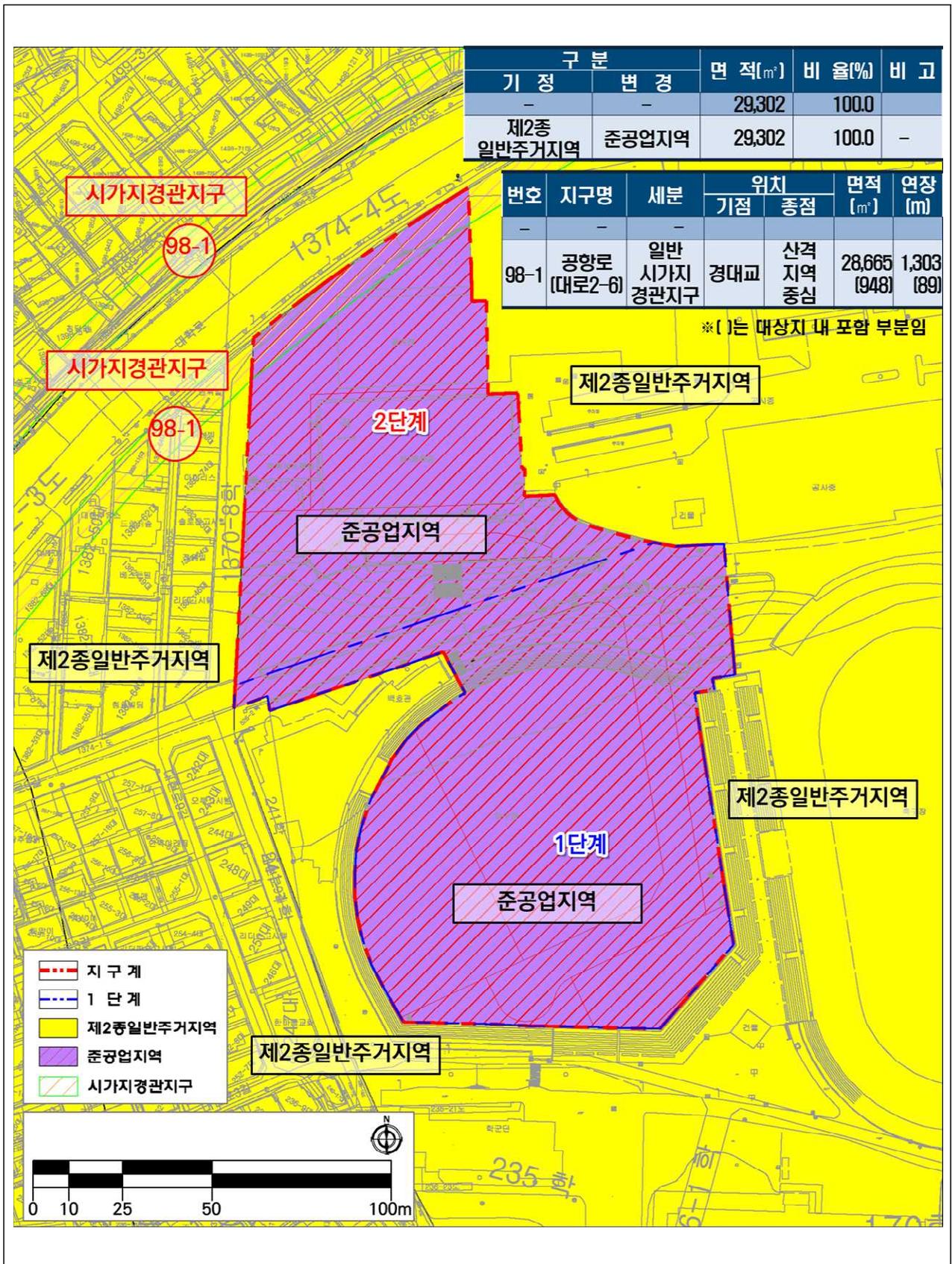
유치업종 및 배치계획(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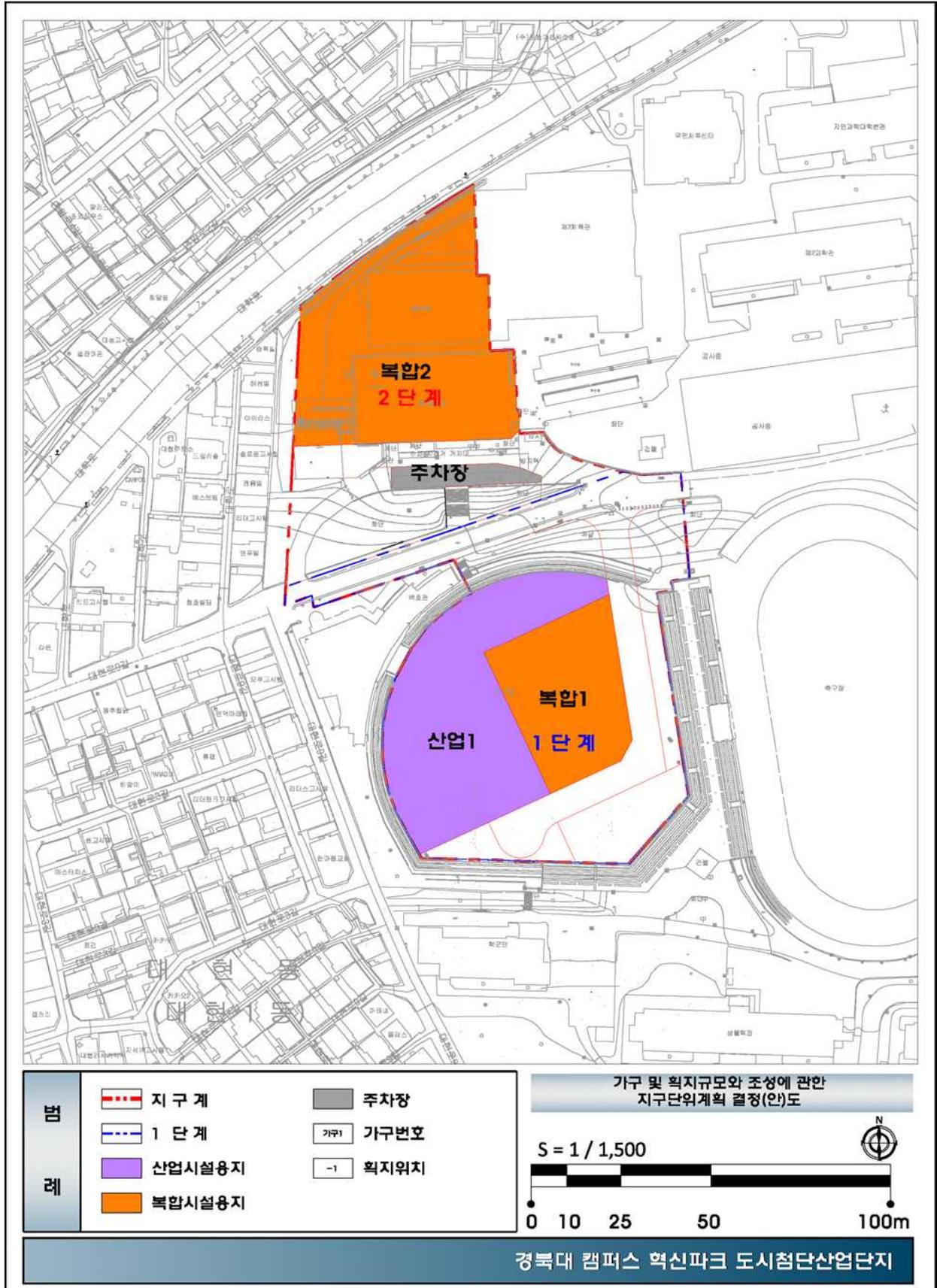
□ 기반시설 및 기타시설 계획(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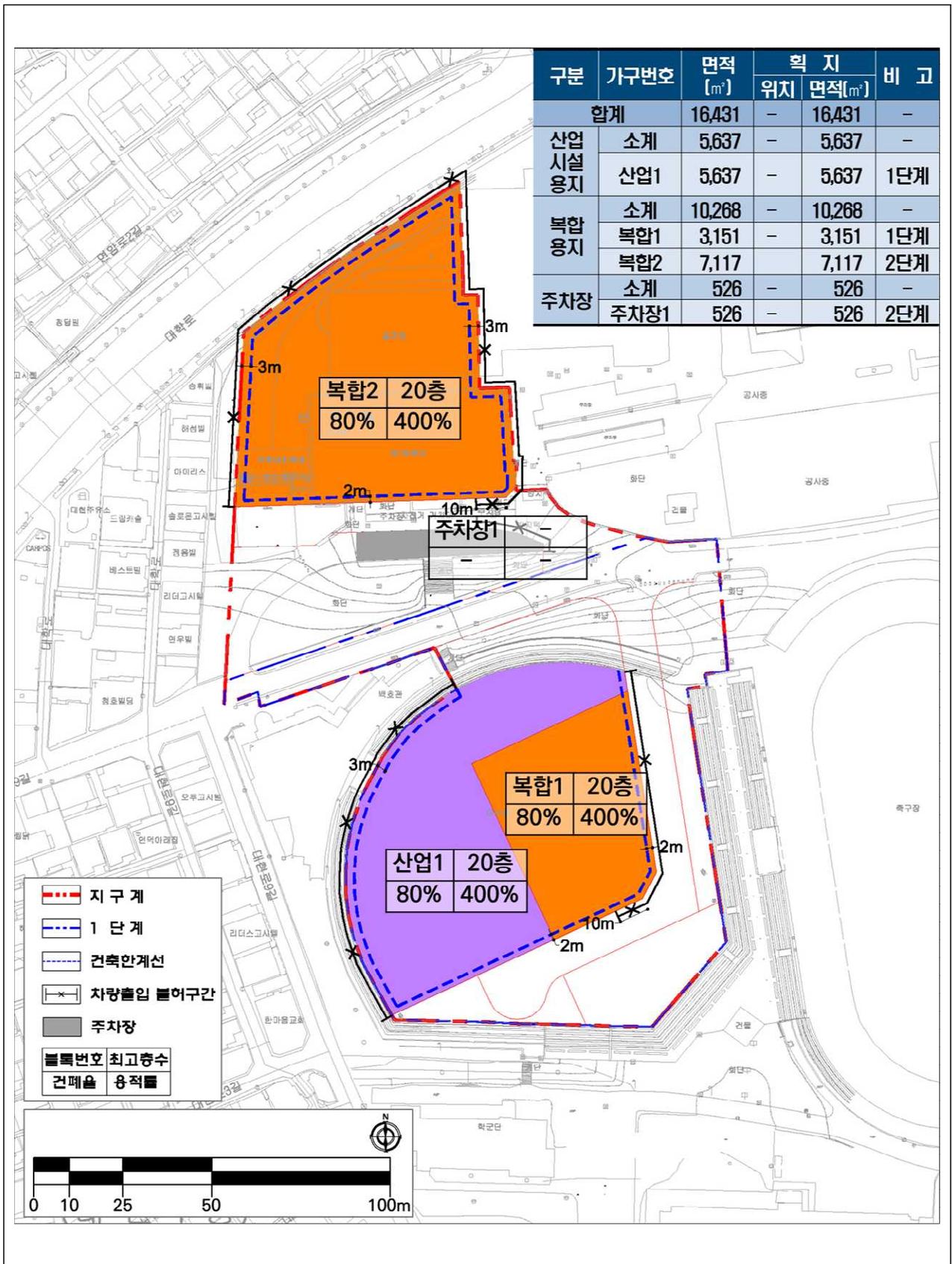
□ 용도지역계획(안)



가구 및 획지계획(안)



□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(안)



① 산업시설용지

| 구분 | 계 획 내 용 |
|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산업 1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(지원시설^주) 포함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 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•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의 10. 교육연구시설 중 마. 연구소 ※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환경오염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중사업장부터 4중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,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(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) 중 폐수·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·흡수식 냉·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,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별표13 (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)의 물질 중, 「하수도법」 시행규칙 별표1 (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)에서 정하는 물질(BOD, COD, SS, T-N, T-P, 총대장균군수)의 경우,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'나'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'가'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- 「악취방지법」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-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, 보관, 저장하는 공장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불허 용도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허용용도 외의 용도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건폐율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80% 이하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용적률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00% 이하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높이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층 이하 |

주 : 지원시설이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 4 ②항에 따른다. 단, 오피스텔은 제외함.
지원시설의 비율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 4 ④항을 준용함.

② 복합시설용지

| 구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복합 1~2 | 산업 시설 (전체 연면적의 50%이상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(지원시설 제외)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 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•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의 10. 교육연구시설 중 마. 연구소 <p>※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환경오염시설은 입주를 제한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,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(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) 중 폐수·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·흡수식 냉·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,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별표13 (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)의 물질 중, 「하수도법」 시행규칙 별표1 (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)에서 정하는 물질(BOD, COD, SS, T-N, T-P, 총대장균군수)의 경우,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'나'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'가'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- 「약취방지법」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약취배출시설 -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, 보관, 저장하는 공장 |
| | 불허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허용용도 외의 용도 |
| | 지원 시설 (전체 연면적의 50%미만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- 공동주택 중 기숙사 -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) -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, 전시장 - 판매시설 중 상점(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에 한함) -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 -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- 운동시설 -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<p>※ 제1,2종 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(상점)의 바닥면적 총합은 전체 연면적의 20%이하로, 2층 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다.</p> |
| | 불허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서 불허하는 시설 |
| | 건폐율 | • 80% 이하 |
| 용적률 | • 400% 이하 | |
| 높이 | • 20층 이하 | |